[총무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준수사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신분증과 포획허가증을 항상 휴대
2. 허가기간, 허가지역, 포획목적, 포획방법, 안전수칙을 준수
   ※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시에만 출동, 다만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체제 종료시까지는 예찰 및 사전 포획 활동 가능
3. 음주상태·심신미약 하에서 포획활동 금지, **총기사용 전 포획대상 및 주변에 사람존재 유무 재차 확인 후 총기 사용**
4. 허가된 포획수량 준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즉시 부착 및 포획물은 5일 이내에 신고
5.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거래 및 자가소비 금지
   ※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체제 종료시까지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비닐 밀봉하여 반입.
6. 총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허가 취소
7. 총기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고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비한 수렵보험 가입(수렵보험 미갱신시 허가 자동 취소)
8. 허가기간 종료 시 허가증 뒷면의 야생동물 포획신고내역을 기재하여 허가증 반납
9.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불법엽구 등 발견시 수거조치 후 환경과로 신고
10. 포획활동을 위한 마을 방문 시 반드시 해당 읍면(마을이장 등)에 알림
11. 포획활동 시 식별이 용이한 복장(피해방지단 조끼) 착용 및 긴급상황 대비 구급약 지참

포획 시 안전수칙(시행규칙 제31조)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가능.

[총무 붙임 2]

포획 활동 시 방 송 문(안)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을에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오늘(현재) 포수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마을 일원에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총기소리에 당황하지 마시고 가능한 바깥출입을 자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을 축사나 울타리 내로 옮겨서 사냥개로 인한 가축피해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상기 내용 반복)

[총무 붙임 3]

설 명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마을방송(안)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나와 우리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상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정 고성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포함된 친지 간 만남, 친족 모임은 가능한 소규모로 짧게 머물러 주세요.
○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만남을 자제하고 검사·진료를 받으세요
○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 3밀(밀접, 밀폐, 밀집)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해주세요.
○ 60세 이상은 설 연휴 전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고성군을 지키고 일상방역의 생활화에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붙임 4]

방 송 문(안)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 귀성객, 성묘객 등 사람, 차량의 많은 이동이 예상됩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새도래지, 바이러스 발생우려 지역 및 농가
방문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묘를 위한 입산 시 입산경로 이외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수레 등 야생멧돼지 먹이주기를 금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붙임 5]

국민행동 기본원칙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 준비
활동 후 탈의 및 비닐로 밀봉
※ 일회용 보호복(방역복 등) 착용 권장(일회용 물품 폐기, 나머지 세척)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저수지, 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
출입 자제 및 AI 발생지역에서 낚시 금지

이동시에는 분변, 깃털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 분변에 노출 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세정

철새서식지 출입 후 가금(닭,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

조류인플루엔자(AI) Q&A

Q1 조류인플루엔자(AI)는 어떤 질병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호흡기 질병

Q2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변에 오염된 AI는 4 ℃에서 35일간 생존, 호수 등 물에서는 22 ℃에서 4일간, 0 ℃에서 30일간 생존

※ 가금육은 75 ℃에서 5분간 가열시 바이러스 사멸

Q3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토양, 물, 분변 등을 신발, 의복, 차량바퀴 등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주된 전파 경로

Q4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

AI 감염 조류는 무증상 돌연사, 설사, 구토, 쇠약, 행동이상(머리 기울임, 머리·목 비틀기), 보행이상(기립 및 날개짓 불능) 등을 보임

조류AI 신고요령

이럴때 신고하세요

-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조류 발견 시

※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
(062-949-4367/4382)

여기에 신고하세요

- 시·군·구 환경과
- 유역(지방) 환경청 자연환경과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 수칙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국민 행동요령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총무 붙임 6]

<야생멧돼지 ASF 신고 및 행동요령>

수렵 물품

구분		물품상세
방역	보호	방역복, 마스크, 장갑, 장화
	소독	생석회, 분무형 소독제, 소독제 분무기
	기타	두꺼운 비닐, 접근금지 테이프
운반		들것, 밧줄
시료채취		시료채취키트, 칼, 주사기
기타		GPS, 랜턴

수렵중 오염 요인

수렵개체 부정 신고는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정신고 감별이 가능

※ 부정 신고 및 양성 폐사체 이동 조치는 오염의 인위적 확산과 방역대책 혼란 등 부작용 야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렵인의 적극적인 오염예방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 예방을 위한 수렵인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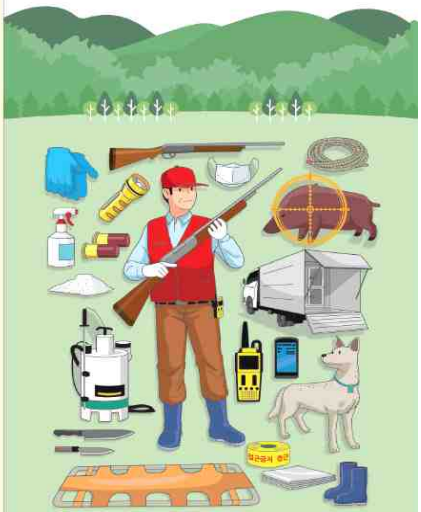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수렵전

1 세탁된 의복 및 수렵복 착용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파악
※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서 확인

3 수렵과 방역에 필요한 물품적재
(총기, 소독제, 생석회, 비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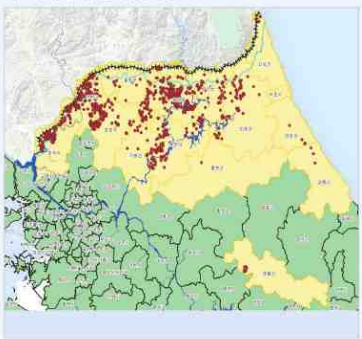

발생지역 확인: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구글 검색)

수렵중

1 엽견이 사살된 멧돼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2 비닐을 깔아 주변으로 혈액 오염 방지 후 사진촬영 및 GPS 좌표 기록

3 칼과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시료채취 후 멧돼지는 원칙적으로 비닐로 밀봉
※ 멧돼지 한 마리 당 칼과 주사기는 한번만 사용
(칼은 철저한 소독 후 재사용가능하나 주사기는 재사용금지)

4 수렵지점 및 시료채취 지점 소독조치(액상 및 생석회) 후 출입금지 테이프로 표시

5 밀봉한 사체를 들것 등 운반도구를 이용해 이송
(사체는 혈액 등 오염물질이 새지 않도록 두꺼운 비닐로 밀봉 조치)

6 수렵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별도의 비닐에 담아 겉을 소독하여 폐사체 집하장으로 운반

※ 수렵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경우 손대지 말고 시군 환경과로 즉시신고(GPS 좌표확인 및 사진촬영)

수렵후

1 적재함에 비닐을 깔고 밀봉된 사체를 싣기

2 현장대응복(옷, 신발) 및 장비(총기) 소독

3 폐사체이송 전 후 적재함, 엽견케이지, 바퀴, 차량 실내 발판 등 소독

4 엽견 소독(발: 소독제 분무, 얼굴: 부드러운 천에 소독제 묻혀 세척)

5 수렵에 사용했던 옷, 모자, 장갑, 수건, 신발 등은 귀가 후 즉시 세탁

6 수렵한 멧돼지 양성여부 확인되기 전까지 엽사는 농장 방문금지 및 엽견은 타지역 수렵활동 금지
(시군 환경과를 통해 확인)

※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과 엽견, 장비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7일 이상 수렵견 수렵활동 금지

[총무 붙임 7]

고성군 1월 3주차 시간표 CGV

개 봉 영 화	유령 / 교섭

1 / 17 (화)

1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2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영웅	10 : 00	12 : 10	1	아바타-물의 길	10 : 30	13 : 52
2	스위치	12 : 20	14 : 23	2	아바타-물의 길	14 : 30	17 : 52
3	영웅	14 : 40	16 : 50	3	아바타-물의 길	18 : 30	21 : 52
4	스위치	17 : 10	19 : 13				
5	영웅	19 : 30	21 : 40				

1 / 18 (수)

1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2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유령	09 : 30	11 : 43	1	교섭	10 : 00	11 : 48
2	유령	12 : 00	14 : 13	2	교섭	12 : 30	14 : 18
3	유령	14 : 30	16 : 43	3	교섭	15 : 00	16 : 48
4	유령	17 : 00	19 : 13	4	교섭	17 : 30	19 : 18
5	유령	19 : 30	21 : 43	5	교섭	19 : 50	21 : 38

1 / 19(목)

1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2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유령	09 : 30	11 : 43	1	교섭	10 : 00	11 : 48
2	유령	12 : 00	14 : 13	2	교섭	12 : 30	14 : 18
3	유령	14 : 30	16 : 43	3	교섭	15 : 00	16 : 48
4	유령	17 : 00	19 : 13	4	교섭	17 : 30	19 : 18
5	유령	19 : 30	21 : 43	5	교섭	19 : 50	21 : 38

1 / 20 (금)

1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2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유령	09 : 30	11 : 43	1	교섭	10 : 00	11 : 48
2	유령	12 : 00	14 : 13	2	교섭	12 : 30	14 : 18
3	유령	14 : 30	16 : 43	3	교섭	15 : 00	16 : 48
4	유령	17 : 00	19 : 13	4	교섭	17 : 30	19 : 18
5	유령	19 : 30	21 : 43	5	교섭	19 : 50	21 : 38

1 / 21 (토)

1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2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유령	09 : 30	11 : 43	1	교섭	10 : 00	11 : 48
2	유령	12 : 00	14 : 13	2	교섭	12 : 30	14 : 18
3	유령	14 : 30	16 : 43	3	교섭	15 : 00	16 : 48
4	유령	17 : 00	19 : 13	4	교섭	17 : 30	19 : 18
5	유령	19 : 30	21 : 43	5	교섭	19 : 50	21 : 38

1 / 22 (일)

1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2관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유령	09 : 30	11 : 43	1	교섭	10 : 00	11 : 48
2	유령	12 : 00	14 : 13	2	교섭	12 : 30	14 : 18
3	유령	14 : 30	16 : 43	3	교섭	15 : 00	16 : 48
4	유령	17 : 00	19 : 13	4	교섭	17 : 30	19 : 18
5	유령	19 : 30	21 : 43	5	교섭	19 : 50	21 : 38

[찾아가는복지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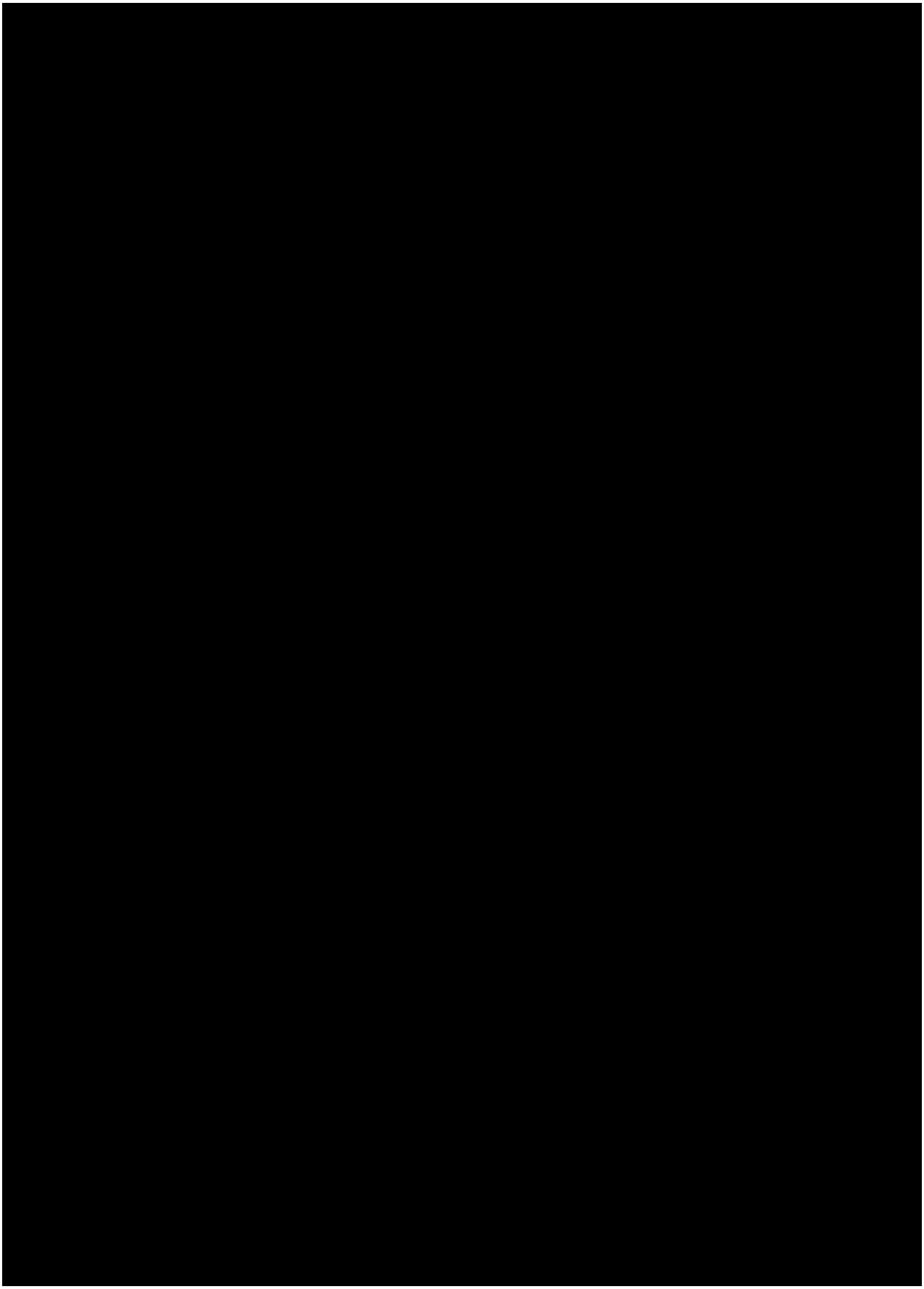

[찾아가는복지 붙임 2]

< 마을방송(안)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보건소에서 설 연휴간 고향 방문하는 가족 및 친지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개별방역수칙 준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께서는 경로당 이용 및 사적모임의 최소화, 가족간 짧게 머무르기, 주기적 실내환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경로당 등 많은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제한, 주기적 실내 환기(일 3회이상)
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 감소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동절기 추가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문의사항은 ☎670-4080~91로
코로나19 관련사항은 ☎055-670-401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복지 붙임 3]

【설 연휴 코로나19 의료기관 등 운영 안내】

◆ 설 연휴 기간: 2023. 1. 21.(토)~1. 24.(화), 4일간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구분	운영시간	점심시간	비고
선별진료소	09:00 ~ 17:00	12:00 ~ 13:00	접수마감: 16:30

▣ 원스톱 의료기관 운영

의료기관명	연휴기간 의료기관 운영상황 등				연락처
	1. 21.(토)	1. 22.(일)	1. 23.(월)	1. 24.(화)	
강병원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주간:055-673-0101 야간:055-673-4848
더조은병원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주간:055-672-1111(0) 야간:055-672-1111(8)
부산의원	09:00~13:00	-	-	09:00~13:00	055-674-8119

▣ 자율입원 및 의료상담센터 운영

의료기관명	연휴기간 의료기관 운영상황 등				연락처
	1. 21.(토)	1. 22.(일)	1. 23.(월)	1. 24.(화)	
강병원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주간:055-673-0101 야간:055-673-4848
더조은병원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주간:055-672-1111(0) 야간:055-672-1111(8)

▣ 먹는치료제 처방가능 문여는 약국 운영

의료기관명	연휴기간 약국 운영상황 등				연락처
	1. 21.(토)	1. 22.(일)	1. 23.(월	9.12.(월)	
남산약국	09:00~19:00	09:00~19:00	09:00~21:00	09:00~21:00	055-674-2266
장수약국	09:00~19:00	09:00~19:00	09:00~19:00	09:00~21:00	055-673-7616

▣ 코로나19 대응 행정안내센터 운영

- (변경) ☎ 055)670-4017~4018, 24시간 운영

[찾아가는복지 붙임 4]

'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안)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1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탈수급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차(2월)	2.1(수)~2.13(월)	2.1(수)~2.15(수)	2.1(수)~2.22(수)	2.23(목)	2.24(금)~2.27(월)	2.24(금)~2.27(월)	2.28(화)~3.2(목)
2차(4월)	4.3(월)~4.13(목)	4.3(월)~4.17(월)	4.3(월)~4.24(월)	4.25(화)	4.26(수)~4.27(목)	4.26(수)~4.27(목)	4.28(금)~5.1(월)
3차(6월)	6.1(목)~6.13(화)	6.1(목)~6.15(목)	6.1(목)~6.22(목)	6.23(금)	6.26(월)~6.28(수)	6.26(월)~6.28(수)	6.29(목)~6.30(금)
4차(8월)	8.1(화)~8.11(금)	8.1(화)~8.16(수)	8.1(화)~8.22(화)	8.23(수)~8.24(목)	8.25(금)~8.29(화)	8.25(금)~8.29(화)	8.30(수)~8.31(목)
5차(10월)	10.2(월)~10.12(목)	10.2(월)~10.16(월)	10.2(월)~10.23(월)	10.24(화)~10.25(수)	10.26(목)~10.27(금)	10.26(목)~10.27(금)	10.30(월)~10.31(화)

2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차(2월)	2.1(수)~2.22(수)	2.1(수)~2.24(금)	2.1(수)~3.31(금)	4.3(월)~4.17(월)	4.3(월)~4.24(월)	4.25(화)~4.26(수)	4.27(목)~4.28(금)
2차(5월)	5.1(월)~5.24(수)	5.1(월)~5.26(금)	5.1(월)~6.30(금)	7.3(월)~7.17(월)	7.3(월)~7.24(월)	7.25(화)~7.26(수)	7.27(목)~7.31(월)
3차(8월)	8.1(화)~8.23(수)	8.1(화)~8.25(금)	8.1(화)~9.27(수)	10.2(월)~10.16(월)	10.2(월)~10.23(월)	10.24(화)~10.25(수)	10.26(목)~10.31(화)

3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차수	신규모집	신청정보 확인·접수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탈수급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차(1월)	'22년 신청자 후순위 처리로 모집은 미실시			1.5(목) ~1.13(금)	1.5(목) ~1.25(수)	1.26(목)	1.27(금) ~1.31(화)	1.27(금) ~1.31(화)	2.1(수) ~2.3(금)
2차(5월)	5.1(월) ~5.19(금)	5.1(월) ~5.26(금)	5.1(월) ~7.31(월)	8.1(화) ~8.16(수)	8.1(화) ~8.22(화)	8.23(수) ~8.25(금)	8.28(월) ~8.31(목)	8.28(월) ~8.31(목)	9.1(금) ~9.5(화)

* 미달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

[찾아가는복지 붙임 5]

희망저축계좌 I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고성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고성지역자활센터(☎ 674-2001)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찾아가는복지 붙임 6]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고성지역자활센터(☎ 674-2001)

[찾아가는복지 붙임 7]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산업경제 붙임 1]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

경작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가 강화됩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개정)

-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신규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거리가 상당히 먼 농업인(관외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은 신청서와 함께 제공 예정

-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부정등록자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년도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

1.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1.9일 주간
2. 비대면 신청 기간 : 2월(1개월간)
   사전검증 결과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
3. 방문 접수 기간 : 3~4월(2개월간)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
4.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 ~5월 말
   시군구, 읍면동 일정에 따라 상이
5. 실경작 여부, 농지 분할 현장 조사 : 5~9월
6.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9월
   다만,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
7.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30일
8.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중

문의처 Agrix 콜센터(비대면) 1588-6830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내선2번)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2023년도 공익직불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17~'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23년부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법 제8조 일부 개정)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농지 17.4만ha에 추가 지원 가능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대로 약 56만명 농업인(신규 30만명, 기존 수혜자 26만명)이 추가 수혜 예상
  * 기존수혜자 : 종전에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면적 증가

실제 지급 대상은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직불금 지원 가능성 사전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정보를 기준 으로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합니다.

(법 제6조의2 신설)

- 종전에는 신청·접수 후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나,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 안내

- 사전검증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자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 안내 예정
  * 다만, 신청 후 농업외소득 등 추가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여부 조사 등 부적격이 확인되면 지급 제외
  - 신청 안내를 받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조사 확대

'23년부터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현장 조사가 확대됩니다.

(법 제17조제2항 개정)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자격요건 검증 강화
  *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자재구매 이력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 농지에서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합동특별조사반 구성·운영(5~9월)
  *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거나 농식품부 보조사업 불일치자(면세유, 친환경, 전략작물 등)는 집중 현장조사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또는 5년 지원 제한

Q&A

Q1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 하면 기본직불금을 신청 못 하나요?

기본직불 방문 신청접수 기간(3.2~4.28.) 중에 관할 지역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휴일은 제외하고 안내

Q2 문자(카톡 등)는 언제 오는 거죠?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는 약 1주일 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2.1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신청 요청 문자가 발송될 예정 입니다.

Q3 저는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방문 접수대상자이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핸드폰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문자는 받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통장님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인터넷이 되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월 초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2.1.~28.(1개월간)
- **방문 신청 기간**: 3.2~4.28.(2개월간)
  ※ 휴일은 제외하고 안내
-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5월 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9월
  ※ 다만,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30일 기준으로 10.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 11월 중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2023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5분이면 신청 완료!

Agrix 콜센터 1588-6830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내선2번)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는?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

기본직불 방문 신청대상자

①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농업인

② 신규신청자(※ '16~'22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③ '22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④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⑤ 농업법인

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01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02

방문 접수대상자에게는 관할 읍면동에서 4월 초에 기본직불 신청서를 인쇄·배포 합니다.

어떻게 간편 신청하나요?

1단계
수신 문자를 확인
▶링크 클릭

2단계
개인
인증해주세요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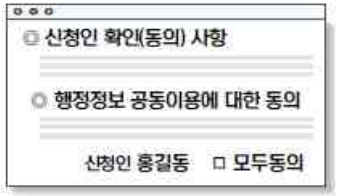

4단계
신청인 및 농지정보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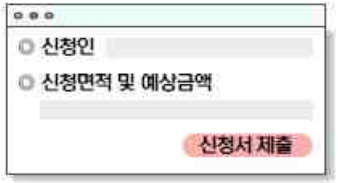

※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접수 도입 예정

기본직불 신청내용 확인 및 변경

Q 잘 신청되었는지 궁금해요

A 1차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간편 신청한 농업인의 전화번호로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관할지역 :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2차
기본직불 신청접수 기간이 완료된 후 약 5월말경 등록자에게 기본직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은 반드시 보관하여 주세요.
※ 등록증은 여건에 따라 '공인알림문자' 또는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Q 앗!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해요

A ① 기본직불 신청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서 변경하도록 신청해주세요.
※ 읍면동에서 등록증 발급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이 가능
※ 다만, 농지 양수·양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②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하시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 붙임 2]

1.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

❑ 목 적

○ 식물, 곤충 등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 국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도모

❑ 추진계획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00,000천원(보조 80,000, 자부담 20,000)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법인, 농업인 등)

- 기존 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교육장 등)이 있으며, 원예, 곤충, 동물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영체만 가능

○ 사업내용

- **(필수)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자원별 치유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컨설팅**
- **(필수)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 : 8회기(동일 대상 8회기, 비동일 대상 4회기×2회)**
- **(필수) 참여자 전·후 효과측정(진단기구, 설문조사)**
- 프로그램 운영 교구, 교육 교재 등 제작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등 환경조성

*** 시설비의 경우 사업비의 50% 이내로 집행**

❍ 지원범위 : 프로그램 개발, 교구·교재 제작, 치유환경조성, 컨설팅, 진단 장비 및 분석 수수료, 홍보물, 표찰, 평가회

<지원제한>
- 건축 신축 비용 지원불가(증축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유의사항>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반드시 전문 취급업체 견적서 첨부**
- **기타 첨부서류(신청서 참조)**

❑ 기대효과

○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에 기여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2.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 목 적

○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 증진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농촌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 마을공동체의 침체 등과 같은 농촌문제 해결 촉진

❑ 추진계획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50,000천원(보조 50,000)

○ 사업대상

- 농촌노인과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주민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합의가 된 마을로 사업완료 후에도 활동이 지속가능한 마을

○ 지원내역

- 소일거리 사업화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포장개발 등 기반 조성
- 사회·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 사업의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반드시 전문 취급업체 견적서 첨부**
- **기타 첨부서류(신청서 참조)**

❑ 기대효과

○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풍요로운 노년생활 영위

○ 고령농업인에게 적절한 노동과 공동체 참여기회 제공으로 농촌 활력 증진

3.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 목　　적

○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추진계획

○ 사 업 량: 1명

○ 사 업 비: 9,000천원(보조 7,200, 자부담 1,800)

○ 사업대상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군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2023. 1. 1. 이후 등록자 제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내역: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제외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출산급여에서 일부 지원함)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기타 첨부서류(신청서 참조)**

4. 농어가도우미 지원

❑ 목　　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동 지침의 내용 중 농업인은 농어업인, 농가는 농어가, 영농은 영농·영어를 포함.

❑ 추진계획

○ 사 업 량: 1명

○ 사 업 비: 6,300천원(보조 5,355, 자부담 945)

○ 사업대상

-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된 자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마을이장 및 읍면장 확인서 첨부)

○ 지원내역: 1일 지원 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를 예산 지원

○ 지원일수: 90일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기타 첨부서류(신청서 참조)**

5.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 목　　적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계획

○ 사 업 량: 35개소

○ 사 업 비: 78,750천원(보조 78,750)

- 개소(마을)당 2,250천원

○ 지원대상: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 농촌 인구 감소 추세 지속 등에 따라 몇 개의 마을을 묶어 20명 이상일 경우도 지원 가능 (이 경우, 사업비 집행을 위한 대표마을 선정)

○ 급식기간 : 25일 이내

- 급식인원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되 20일 이상 실시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연간 2회정도 분할 운영가능

○ 급식방법 : 공동급식, 도시락, 배달식등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 및 배달식 등 지원

※ 도시락 및 배달식 이용의 경우 배달료 지원 불가

○ 산출근거

- 조리원 인건비: 50천원/일 × 25일(연간) = 1,250천원
- 부식비 등: 40천원/일 × 25일(연간) = 1,000천원
- 도시락 및 배달식 : 1인당 8천원/일

※ 마을여건에 따라 인건비와 부식비는 서로 50% 내에서 전용 가능하며 단순 위생장비 구입등은 부식비에서 지출가능함.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첨부서류(신청서 참조)